

## 상하이 FTZ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 발표

조고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(☎kucho@kiep.go.kr)

### 주요내용

- 상하이시 정부는 6월 28일 「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서비스업 대외개방 네거티브리스트(2017년판)」(이하,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)를 발표함.
-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는 크게 시장진입 제한과 내국민대우 제한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, 4개의 금지·제한 항목이 철폐되어 총 48개의 특별관리조치를 포함
-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는 금융서비스업 개방수준의 실질적 제고보다는 제도 적용의 투명성과 실용성 제고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

## 1. 이슈 현황

### ■ 상하이시 정부는 6월 28일 「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<sup>1)</sup> 금융서비스업 대외개방 네거티브리스트(2017년판)」(이하,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)를 발표함.<sup>2)</sup>

-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(FTZ)는 '13년 9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(이하, 네거티브리스트)를 꾸준히 발표해 왔으며, 2017년판 네거티브리스트도 6월 16일 발표하였음.<sup>3)</sup>
  - '네거티브리스트'는 여러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진입 금지·제한 조치를 열거한 목록임
- 6월 28일 발표된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는 상기 6월 16일자 네거티브리스트와는 별도로,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금지·제한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특징임.

1)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금융개방,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, 무역자유화 등 경제 개혁·개방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의 상하이 4개 보세구에서 시작된 자유무역구(FTZ)로서,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베드라고 볼 수 있음.

2) 中国(上海)自由贸易试验区金融服务业对外开放负面清单指引(2017年版).

3)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(负面清单).

'13년과 '14년에는 상하이시 정부가, '15년과 '17년에는 국무원이 동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으며, '15년, '17년 네거티브리스트의 경우 중국의 여타 자유무역시험구에도 적용됨.

□ 상하이시정부는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한 배경으로 △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의 진전에 따른 금융업 대내외 개방 확대 △미국, 영국 등 금융 선진국 사례를 참고한 투자자서비스 효율 제고 및 투자자권익 보호를 거론하였음.

■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는 크게 시장진입 제한과 내국민대우 제한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, 4개의 금지·제한 항목이 철폐되어 총 48개의 특별관리조치를 포함

□ ‘시장진입 제한’은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시장 진입 시 제한·금지 규정을 의미하며, 세부적으로 자산규모, 경영실적, 출자한도 등 총 7개 유형에 대한 제한조치가 열거되어 있음.

□ ‘내국민대우 제한’은 외자의 중국시장 진입 후 업무관리 규정이며, 업무범위 제한, 운영지표 요건, 거래소 자격 제한 등 총 3개 유형이 포함됨.

□ 2015년판과 비교할 때 2017년판 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 △해외은행 지점의 정부채권 대리발행, 대리상 환 및 인수 업무제한 △위안화업무 취급에 필요한 최소영업기간 요건 △해외투자자가 금융자산관리회사에 투자 시 적용되는 총자산요건 △중국보험감독당국의 비준을 받지 않은 외자보험회사는 그 관계회사와 재보험의 출재 및 수재 업무에 참여 불가 등 네 개 항목이 철폐됨.

□ 동 네거티브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금융건실성, 국가안전, 공공질서, 공공문화, 정부구매, 보조금, 특수수속 및 세수(稅收)와 관련된 사항은 현행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음.

표 1.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 (2017년판) 일부 내용

	유형	업종	특별관리조치
시장진입	1 출자회사의 형태	소비금융	주요 출자자는 금융기관이어야 함.
	2 자산규모	신탁회사	최근 1개 회계연도 말 기준 총자산이 10억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함.
	3 경영실적	자금중개	독자 또는 합자 형태의 경우 20년 이상의 자금중개업 경영 경험 보유
	4 자본금요건	기금공사	중외합자기금관리공사의 해외출자자는 납입자본 3억 위안 이상
	5 출자한도	금융자산관리공사	단일출자의 경우 20%, 공동출자의 경우 총 25%를 넘지 않아야 함.
	6 지점 설립 및 운영 요건	보험회사	해외보험회사의 지점은 2억 위안 이상의 운영자금을 본사로부터 받아야 함.
	7 기타 금융기관 진입 제한	신용등급평가회사	〈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(2015)〉 제한항목 제29조에 따라, 신용조사 및 평가 서비스 회사는 제한항목에 속함.
내국민대우	8 업무범위 제한	보험중개	외자 보험중개회사는 허가목록 이외의 중개업무 종사 불가
	9 운영지표 요건	은행	외국은행 분점은 자산유동성을 확보해야 함. 유동성 자산과 유동성 부채의 비율은 25% 이상 유지
	10 거래소 자격 제한	증권, 선물	중국정부가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, A주 증권 및 선물 계좌 개설 불가

자료: 中国(上海)自由贸易试验区金融服务业对外开放负面清单指引(2017年版)

## 2. 전망과 시사점

### ■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리스트는 금융서비스업 개방수준의 실질적 제고보다는 제도 적용의 투명성과 실용성 제고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

- 동 네거티브리스트는 금융서비스업 대외개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법적근거와 세부설명까지 제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투명성과 실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
- 출자회사의 형태, 자산규모, 출자한도 제한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 개방수준의 실질적 제고 면에서는 한계를 보임.
  - 예를 들어 외자 선물 및 증권회사에 대한 49% 출자한도는 여전히 적용 

#### 참고문헌

- 중국 국무원, 상하이시, 인민은행 웹사이트 등

#### 알립니다

-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